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59892 판결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8.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56045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유리창 세척장치에 관한 발명특허를 보유한 업체이다.”를 “가.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로, 제5면 제17행의 “증인 C, G”을 “제1심 증인 C, G”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원고의 청소용역업무 수행장소인 매장방문을 금지하고 같은 달 29. 임의로 원고가 운영하던 D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청소용역 수행이 불가능해지자 부득이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시 지급한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9. 5. 말경 피고의 책임을 묻는 것을 유보한 채 이 사건 계약의 실현을 포기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9. 5. 말경에는 해지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7,000만 원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한 발명특허기계 H 유리창 세척기기 1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특허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특허가 유효하고 피고가 그 특허권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사업비 명목으로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 약정 부분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위 일부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 위 7,000만 원 중 사업비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D 독점사업권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해지 약정금으로 위 7,000만 원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2019. 5. 16. 원고의 남편 C의 일방적인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지급한 7,0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이 아니고 사업구역 독점권 부여와 이 사건 기계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소멸성 비용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5. 말경 이 사건 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지급한 7,000만 원의 성격

원고가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사업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7,000만 원은 ① 이 사건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시키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과 ② 피고의 사업구역에 대한 독점권 및 이 사건 기계 대여에 대한 대가인 사업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7,000만 원 중 보증금과 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7,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000만 원은 대부분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돈 중 700만 원(10%)은 사업비 명목으로, 6,300만 원(90%)은 보증금 명목으로 각 지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E 청소용역이 주된 내용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위 E 청소용역 등 피고가 제공한 청소용역만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20~30%를 영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미 원고가 수행한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20~30%를 영업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피고의 별도 해지통보가 없는 한 연장된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제시한 D의 연간 예상 수익은 6,128만 원(제세공과금,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데, 원고가 위 연간 예상 수익을 상회하는 금액을 소멸성 비용인 사업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한다.

③ 이 사건 기계의 발명특허는 약 20년 전에 특허출원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계약 전에 소멸한 상태인바,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E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청소용역을 맡기 위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 사건 기계의 매매금액, 대여 당시 중고 가격 등 이 사건 기계의 대여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사업구역에 대한 독점권이란 피고의 D 지역 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활용하여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영업 활동에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E 청소용역인 점,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을 수행하느라 독자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독점권은 그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독점사업권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9. 5.말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사업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3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1.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금액 2,8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